

기 부 장 려 금 신 청 서

① 기부장려금 신청인

성명	주민등록번호
주소(소재지)	

② 기부장려금단체

단체(법인)명	비영리민간단체 (사업자)등록번호
소 재 지	

③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

코 드	구 분	연월일	내 용			금 액
			품명	수량	단가	

본인은 「소득세법」 제59조의4제4항에 따라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 거주자(사업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하되, 「소득세법」 제7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자는 포함)로서 본인이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는 대신 그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상당액을 상기 기부장려금단체가 지급받을 수 있도록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작성방법 및 유의사항

-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, 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에 대해 기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, ③ 기부내용의 코드는 다음 구분에 따라 적습니다.

기부금 구분	코드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	10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(종교단체 기부금 제외)에 따른 기부금	40
「소득세법」 제34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중 종교단체기부금	41

- ③ 기부장려금 신청대상 기부내용의 구분란에는 "금전기부"의 경우에는 "금전", "현물기부"의 경우에는 "현물"로 적고, 내용란은 현물기부의 경우에만 적습니다.
- 기부금 세액공제와 기부장려금을 중복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기부금 세액공제를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.